

1. 개정이유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1685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검역 사유에서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안하는 경우만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며, 활용도가 낮은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및 개인검역신고서를 삭제하고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하여 서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국자 대상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안 제3조의2 신설)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내용,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함.

나.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 도입(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검역소장이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대상 운송수단도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함.

다. 검역감염병 위험도 기반으로 승선검역 기준 조정(안 제6조의5)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선 검역 사유 중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안하는 경우만 승선하여 검역조사 하도록 개선함.

라. 건강상태 조사·신고 관련 서식 일원화(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안 제6조의6, 안 별지 제7호서식)

활용도가 낮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를 삭제하여 동일한 양식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서식의 제목을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하며, 검역조사 시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해야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대해 일부 대상자만 제출하도록 함.

마.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서식을 가로 형식으로 변경(안 별지 제25호서식)

선박 위생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맞도록 가로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검역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국가 및 지역별 감염병 관련 정보
2. 입국 시 필요한 검역조사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를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로, “제출”을 “제출(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제1항제3호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질문서”를 “신고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나.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큰”을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검역소장이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제6조의5제1항제2호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질문서”를 “신고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나.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큰”을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앓은”을 “앓고 접안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검역소장이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제6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신고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나.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건강상태 신고서

(앞쪽)

1. 신고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성명	성별 []남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도착 연월일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명	좌석번호
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또는 한국 내 연락처)	

2.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지역명)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1)	2)	3)	4)
----	----	----	----

3. 최근 21일 동안의 증상에 대해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증상 있음	[]발열	[]오한	[]두통	[]인후통	[]콧물
	[]기침	[]호흡 곤란	[]구토	[]복통	[]설사
	[]발진	[]황달	[]의식 저하	[]점막 지속 출혈 * 눈, 코, 입 등	[]그 밖의 증상 ()
	위의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아래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증상 없음	[] 증상 관련 약 복용	[] 현지 병원 방문	[] 동물 접촉		
	[]				

신고인은 위 건강상태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검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강상태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검역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 후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거나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한 사람은 검역소장에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검역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검역소장 귀하

148mm×210mm[황색지 또는 백상지(80g/㎡)]

HEALTH DECLARATION FORM 健康状态调查表

※ Please fill out in Korean or English.

请用韩文或英文填写。

(뒤쪽)

1. Please provide your personal information below.

请填写本人的个人信息。

Name(姓名)	Sex(性别)	[] Male(男) [] Female(女)
Nationality (国籍)	Date of Birth (出生日期)	
Passport No. (护照号码)	Date of Arrival (到达日期)	
Ship • Flight • Train • Car No. (船舶 • 航空 • 火车 • 汽车)	Seat No. (座位号码)	
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Please provide full address(请填写详细地址)		
Mobile Phone No.手机号码(或韩国联系方式)		

2. Please list all countries(regions) you have visited within 21 days prior to arrival.

请填写过去二十一天之内停留过的国家(地区)。

1)	2)	3)	4)
----	----	----	----

3. Please check(✓) any of the symptoms you have experienced within the past 21 days.

如果在过去二十一天内出现过以下症状,请在症状前的括号内划"✓"。

Symptoms (有症状)	[] Fever (发烧)	[] Chills (发冷)	[] Headache (头痛)	[] Sore throat (咽喉痛)	[] Runny nose (鼻涕)
	[] Cough (咳嗽)	[] Shortness of breath (呼吸困难)	[] Vomiting (呕吐)	[] Abdominal pain (腹痛)	[] Diarrhea (腹泻)
	[] Rash (出疹)	[] Jaundice (黄疸)	[] Loss of consciousness (意识模糊)	[] Bloody mucus (粘膜出血) * Eyes, nose, mouth, etc (眼睛、鼻子、嘴等)	[] Other symptoms (其他) ()
If you checked any of the symptoms above, please check(✓) all that apply from the options below. 如果出现了以上症状,请在下列所有相应选项前的括号内划"✓"。					
	[] Medications taken for symptoms (服用相关症状的治疗药物)	[] Visits to local hospitals (访问当地医院)	[] Contact with animals (接触动物)		
No Symptoms (无症状)	[]				

I hereby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correct.

本人确认上述填写内容全部属实。

Date(日期) (MM/DD/YYYY)
Completed by(姓名) (Signature or Seal)(签字)

Notice 注意事项

1. If the head of a quarantine station, pursuant to Article 12 (3) of the Quarantine Act, requires the submission of this Health Declaration Form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a quarantine inspection, and a person refuses, obstructs, or evades its submission, or submits the form with false information, the person may b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KRW pursuant to Article 39 (1) of the Quarantine Act.

根据《检疫法》第12条第3款,检疫所长为实施检疫调查,认为有必要询问相关事项或者进行检查、调查,并要求提交《健康状况申报表》时,如拒绝、妨碍、逃避提交,或者填写虚假内容并提交的,根据《检疫法》第39条第1款,可处一年以下有期徒刑或者一千万韩元以下罚金。

2. Pursuant to Article 12-2 (1) of the Quarantine Act, any person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who has symptoms suspected of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after having stayed in or transited through a Quarantine Inspection Required Area, or who has stayed in or transited through a Strict Quarantine Inspection Required Area, shall report their health statu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to the Director of a Quarantine Station. Any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is requirement, fails to make such a report or makes a false report may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KRW pursuant to Article 41 (1) of the Quarantine Act.

根据《检疫法》第12条之2第1款,入境大韩民国的人员中,在检疫管理地区停留或者经由该地区后出现疑似检疫传染病症状的人员,以及在重点检疫管理地区停留或者经由该地区的人员,应当向检疫所长申报健康状况等信息。违反上述规定,未进行申报或者进行虚假申报的,根据《检疫法》第41条第1款,可处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国立检疫所长 敬启

일시(Date)

등록번호(Registration/IMO No.)

국립○○검역소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illegible]

이와 같은 위생관리조치를 아래 날짜에 실시하였음 Control measures indicated were applied on the date below

서명(Signature)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증인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 선에서 취한 검체 결과, 분석 결과는 선장에게 가장 편리한 수단을 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다음 기항지에서 이 증명서에 명시된 재검사일일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sults from samples taken on board: Analysis to be provided to ship's master by most expedient means and, if re-inspection is required, to the next appropriate port of call coinciding with the re-inspection date specified in this certificate.

297mm×210mm[백상지(150g/m²)]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첨부물
ATTACHMENT TO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구 분 Areas/facilities/systems inspected	발견 증거 Evidence found	검체 결과 Sample results	검토 문서 Documents reviewed	위생관리조치 Control measures applied	재검일 Re-inspection date	관련 의견 Comments regarding conditions found
☐ 식량(Food)						
- 공급원(Source)						
- 보관(Storage)						
- 준비(Preparation)						
- 공급(Service)						
☐ 수자원(Water)						
- 공급원(Source)						
- 보관(Storage)						
- 배수(Distribution)						
☐ 폐기물(Waste)						
- 보유(Holding)						
- 처리(Treatment)						
- 처분(Disposal)						
☐ 수영장/스파(Swimming pools/Spas)						
- 장비(Equipment)						
- 운영(Operation)						
☐ 의료시설(Medical facilities)						
- 장비 및 의료기기(Equipment and medical devices)						
- 운영 (Operation)						
- 의약품 (Medicines)						
☐ 그 밖의 점검 대상 구역 (Other areas inspected)						

* 열거된 구분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십시오. Indicate when the areas listed are not applicable by marking N/A.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검역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u> <u>1. 국가 및 지역별 감염병 관련 정보</u> <u>2. 입국 시 필요한 검역조사에 관한 정보</u> <u>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u> <u>② 질병관리청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 및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u>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u>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 ----- ----- ----- <u>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u> --

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를 검
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
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
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2.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
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
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기

----- 제출(법 제29조의2
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단
만, 해당 신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의 법정대
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
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
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
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

<삭 제>

<삭 제>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① --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3.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
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4. (생략)

②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대상자의 별지 제7호
서식--- 신고서-----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
른 신고의무자

나.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거나 감염
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

4. (현행과 같음)

② -----
----- 크
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
-----.

1. · 2.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검역소장이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① -----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별지 제7호 서식--- 신고서-----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나.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 4. (생 략)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제14조의3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 5.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①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 2. (생 략)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 신고서

3. · 4. (현행과 같음)

② -----
----- 크
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
-----.

1. (현행과 같음)

2. -----

----- 않고 접안하는 -----

3. ~ 5. (현행과 같음)

6. 검역소장이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대상자의 별지 제7호
서식의 건강상태 신고서(출입
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
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

4. (생 략) ② (생 략)	<u>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u> <u>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u> <u>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u> <u>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u> <u>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u> <u>른 신고의무자</u> <u>나.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u> <u>있는 증상이 있거나 감염</u> <u>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u> <u>다.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u> <u>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u> <u>는 자</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